

#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공항 주변 장애물 관리에 대한 공항시설법령이 개정(시행 2023. 10. 19.)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항안전검사관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관련 행정규칙 내용 반영 및 공항안전검사관 자격 요건 조정(안 제3조, 제4조)
- 나. 자구 수정, 문구 정리 등 미비점 보완(안 제18조, 제19조 등)
- 다.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안 별표 2, 별표 3)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항시설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시정”이란 시정명령”을 ““시정조치”란 지방항공청장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안전저해요소”란”을 ““안전위해요인”이란”으로, “지형·지물”을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8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제30호부터 제3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3호를 삭제한다.

15. “시정지시”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29. “개선권고”란 공항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전위해요인이 있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개선방법을 공항운영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

한다.

제4조제1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토목·건축·전기·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 제4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 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해당분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항공·토목·건축·전기·기계분야 5년 이상 근무.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정요구 및 통보”를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다른 지방항공청 및 공항운영자 소속의 담당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기간”을 “시정지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를 명하는 경우 2개월 안”을 “개선권고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이상이”를 “이상”으로, “안에 추진일

정”을 “이내의 추진 일정”으로, “요구하여야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정명령”을 “시정지시”로, “시정 후”를 “시정조치 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정명령이”를 “시정조치가”로 한다.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지시를 발부한다.
2. 공항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전위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개선권고를 발부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정명령”을 “시정지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명령에”를 “시정지시에”로, “시정명령서”를 “시정지시서”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현장 시정조치를”을 “현장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저해요소”를 각각 “안전위해요인”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규정제정)”을 “(규정 제정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인가함으로써”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함으로써”로, “국토교통부장관에의해 인가된 공항운영규정은 운영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공항운영규정은 공항운영증명서(이하 “운영증명서”라 한다)”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을 “다음 각 호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확인을 시행하였는 지”를 “확인의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확인을”을 “확인을”로, “관련대책을 수립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를 “관련 대책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방지하기위하여”를 “방지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점검(Regularly Scheduled Inspection)은 당해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에 적어도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지속적인 감시점검(Continuous Surveillance Inspec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활동과 시설의 주기적인 상태점검(Periodic Condition Inspection)은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매일 실시보다는 낮은 빈도로 실시한다. 점검주기는 항공기 운항 및 시설규모에 따라 주간, 월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점검(Special Inspection)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과 같은”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1)부터 (4)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불만사항이 접수된 경우

나. 공항이 비정상 상태에 놓인 경우

다. 중요한 기상 이변, 사고 및 준사고 등과 같은 비정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라. 공사와 관련된 불안정한 요소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료된 경우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완전포장(Full-strength pavement)과 갓길(shoulders) 또는 포장된 갓길과 착륙대 사이(이하 “가장자리”라 한다)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최대 4cm까지 단차를 주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서는 포장면 가장자리(Lip)의 단차는 최대 7.5 cm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점검을 실시 하여야”를 “점검을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동급유장비로 사용되는 모든 급유차량은 최소 3개월마다 위험물 안

전관리기준 및 절차에 충족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급유차량이 작동상태 및 누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급유차량이 건물로부터 15m, 다른 차량으로부터 3m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연성을 표시하는 문자 “Flammable”이 차량 양쪽에 표시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문자의 높이는 최소 7.5cm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양쪽에 위험물질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운전석에 “금연” 표시와 흡연 도구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재떨이와 라이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차량 양쪽에서 접근 가능한 2개의 소화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충전 및 봉인되어야 하며 점검표가 부착되어 점검일자가 기록되어야 한다. 분말 소화기가 B-C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ABC 등급으로 분류된 분말 소화기는 항공기를 부식시키고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급유차량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6. 비상차단장치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이 비상차단장치는 차량 양쪽으로부터 접근이 가능

하여야 한다.

7. 전기장치, 스위치, 배선과 후미등 덮개가 폭발방지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열, 충돌 또는 충격으로 인한 발화원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8. 사용가능한 접속용 케이블(Bonding wire)과 집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9. 데드맨 제어장비의 노즐을 점검하여야 한다.

10. 차량의 배기장치가 연료탱크 부분까지 연장되어 있을 경우 배기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와 적절히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항 내 급유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시스템의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급유담당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험물 취급업체의 최소 1인 이상의 감독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동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독자는 연료에 관한 제반 지식과 다음 각 호와 같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8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항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연료의 주요한 특성을 확인하고 설



- 명할 수 있으며 각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인화성, 색상, 냄새, 촉감 등을 이용)
2. 가솔린을 급유한 왕복 엔진과 터빈 엔진을 구별하고 각각의 주요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각각에 사용되는 연료 및 오일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한다.
  3. 정기적으로 같은 종류의 연료가 급유되는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 물, 미생물의 성장, 계면 활성제, 보풀, 녹, 모래, 그 밖의 혼한 고체 입자와 같은 연료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주요 영향을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연료 속에서 위와 같은 오염원이 하나 이상 발견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연료 저장시설의 필수 구성요소와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 등의 기본적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7. 장비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8. 연료 저장시설의 필수 구성요소,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9. 화재의 삼각지대를 이해하고 공항에서 더욱 흔하게 발생하는 점화 요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10. 연료의 누출 시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1. 연료를 저유 탱크, 급유차량 및 항공기에 급유 또는 배출할 때 여과기 및 펌프 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2. 번개 및 비행 중인 항공기의 정전기 발생을 포함하여 대기 중의 방전 현상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3. 대개 연료 저장시설과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는 올바른 소방 기법의 주된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화기 사용법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한다.
  14. 연료 배출 절차 및 사전 주의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5. 제공되는 연료의 무결점을 확인하는 품질관리 검사를 이해하고 시행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6. 적절한 기록 작성을 포함하여 품질관리 절차의 성공적인 구현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17. 기량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8. 개인별 교육훈련 및 보수 교육훈련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위험물 취급자의 교육훈련은 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 ⑤ 급유 담당자는 안전성냥, 딱성냥, 라이터 또는 작동하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떨어뜨렸을 때 점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밖의 품목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모든 탱크, 도크, 저장구역, 급유차량 및 항공기 내·외부의 반경 30m이내에서는 항상 금지된다.

⑥ 급유 담당자를 적절히 감독하고 교육훈련 및 지식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장비 및 필수 구성요소가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인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수 정기점검은 일정 에 따라 실시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며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의 “규정에 적합한” 연료가 올바른 등급과 분량으로 항공기에 정기적으로 급유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제8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를 “급유 담당자는 연료”로, “작동”을 “작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격 있는 직원만이 연료 저장시설이나 장비를 가동하고 항공기에 급유를 실시한다.
2. 연료 하역 및 급유차량의 적재 작업은 자격 있는 직원이 참석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3. 저유 탱크에 연료를 반입하기 전에 규정에 적합한 연료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원이 들어있지 않고 색상, 냄새 및 촉감이 정상적이며 “밝고 깨끗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4. 연료가 반입되는 시점부터 특정 항공기에 급유 될 때까지의 과정을

- 추적하기 위한 적당한 기록체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5. 급유는 반드시 실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한다.
  6. 항공기 급유차량은 다른 급유차량과 3m 이상, 건물에서 15m이상, 급유 및 배출 중이 아닌 항공기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7. 모든 하역, 적재, 급유 및 연료 배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필요하지 않은 모터, 엔진, 무선 장비, 그 밖의 전기 및 기계 장비(보조 동력 장치만을 제외)의 전원을 전부 차단하고 그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8. 연료를 취급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에는 모든 시스템 및 급유차량을 접지하여야 한다.
  9. 항공기 및 급유차량의 연료탱크를 열기 전 또는 급유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급유차량을 적재 도크의 지면에 적어도 하나의 결속 와이어로 연결하여야 한다.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과 급유중인 항공기 사이를 본딩(Bonding)한다.
  10.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모든 연료 저장시설,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또한 항공기에 적재 또는 급유할 연료에 오염물질이 없고 색상, 냄새, 촉감 및 등급이 정상적이며 “밝고 깨끗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11.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7

일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연료 저장시설, 하이드란트 급유전 및 급유차량에 장착된 모든 여과기의 차등압력 점검

나. 모든 노즐 및 호스 연결장치의 거름망 육안점검

12.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30 일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모든 유입 통의 여과기 육안점검

나. 모든 여과기 하단부분에서의 수분탐지 점검

다. 제트 연료시스템인 경우 마지막 여과기의 하단부분에 대하여 최소한 육안에 의한 색상점검

라. 눈에 띄는 점화 원인을 찾기 위한 야간 불꽃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급유차량의 상태에 관한 세밀한 육안점검

마. 내부 연소 엔진의 배기 시스템에 관한 손상 또는 누출 여부

바. 급유차량 전체의 기계적 상태

13.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12 개월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전체 연료 시스템에 들어있는 각각의 여과기를 교체하였거나 또는 요소별 점검을 통하여 추후 12개월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모든 급유호스의 절단 부위, 노출된 전선, 변색, 물러진 부분, 물집, 연결장치 끝부분의 편차 또는 고장 가능성 확인

다. 모든 결속 및 접지장치 또는 연결부에 전기가 통하는지 점검  
라. 접근 가능한 모든 저유 탱크를 열고 침전물 또는 기타 오염물의  
축적여부에 관한 육안점검

14. 급유차량의 적재 및 항공기 급유 작업은 무인 통제장치가 작동 가  
능하고 연료의 흐름을 이 장치로 통제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15. 연료 저장시설과 모든 장비는 연료를 오염시키거나 화재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쓰레기 또는 파편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 되었는지  
확인한다.

16. 모든 소화기의 충전량과 작동상태를 최소 연 2회씩 점검한다.

17. 공항 부근에서 번개가 칠 때에는 연료 관련 작업을 잠시 중단한다.

별표 2 검 사 관 : (서명)의 점검일자 :란 검 사 관 : (서명)의 S란 제1호  
점검 항목란 제1호 중 “공4항”을 “공항”으로 하고, 같은 란 중 “공항시설  
법 제34조제8항”을 “공항시설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3 검 사 관 : (서명)의 점검일자 :란 검 사 관 : (서명)의 S란 제1호  
점검 항목란 제1호 중 “공항시설법 제34조제8항”을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제3항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현장시정, 개선권고 및 시정지시)

별표 5 제5항의 비고란 중 “신청후”를 “신청 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안전저해요소”를 “안전위해요인”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별지 5] 시정결과 확인서(제19조 관련)”를 “[별

지 5] 시정조치 결과 확인서(제19조 관련)”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명령서(문서)번호”를 “지시서(문서)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정명령”을 “시정지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별지 6] 시정명령서 관리대장(제20조 관련)”을 “[별지 6] 시정지시서 관리대장(제20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시정명령서”를 “시정지시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명령서”를 “지시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명령서”를 “지시서”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2. (생략)</p> <p>3. ~ 13. (생략)</p> <p>14. “시정”이란 시정명령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이행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p> <p>15. “시정명령”이란 공항운영검사 결과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p> <p>16. “안전저해요소”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사람의 안전이나 공항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u>지형·지물</u> 등을 말한다.</p> <p>17. (생략)</p>	<p>제3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18. (현행 제2호와 같음)</p> <p>3. ~ 13. (현행과 같음)</p> <p>14. “<u>시정조치</u>”란 지방항공청장의 <u>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u>-----.</p> <p>15. “<u>시정지시</u>”란 공항운영자가 「<u>공항안전운영기준</u>」(국토교통부 고시)(이하 “<u>공항안전운영기준</u>”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항의 <u>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u></p> <p>16. “<u>안전위해요인</u>”이란 ----- ----- ----- <u>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u> ----- -----.</p> <p>17. (현행과 같음)</p>



<신 설>

27. ~ 36. (생 략)

37. “통보”란 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위반 정도가 시정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자율적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검사결과 처리 기준을 말한다.

38. ~ 42. (생 략)

43. “비행안전 확인(Aeronautical Study)”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하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

29. “개선권고”란 공항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전위해요인이 있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개선방법을 공항운영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 ~ 28. (현행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와 같음)

<삭 제>

30. ~ 34. (현행 제38호부터 제42호까지와 같음)

<삭 제>

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요  
건)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항의 개발·설계·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공항 관  
련 분야 5년 이상 근무 <단서  
신설>

2. 항공운항,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안전관리 등 항공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 <단서 신  
설>

3. (생략)

4. 항공·토목·건축·전기·기  
계분야 3년 이상 근무(다만,

제4조(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요  
건) -----  
-----  
-----.

1. -----  
-----  
----- 3년 ----- .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토목·건축·전기·기  
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2  
년 이상 근무

2. -----  
-----  
----- .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 또는 「항공안전  
법」에 따른 해당분야 항공종  
사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경우  
에는 3년 이상 근무

3. (현행과 같음)

4. 항공·토목·건축·전기·기  
계분야 5년 이상 근무.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  
지한 자로 한다)

제18조(검사결과 심의) ① ~ 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본부 소속 공항안전검사관은 회  
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운영절차는 별표  
5와 같으며, 심의결과는 시정요  
구 및 통보로 처리한다.

제19조(시정명령 등) ① 지방항공  
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  
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공항운영규  
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시정  
명령 또는 통보)을 명하여야 한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는 3년 이상 근무

제18조(검사결과 심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  
통부, 다른 지방항공청 및 공항  
운영자 소속의 담당자를 위원회  
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⑥ -----  
----- “시정지  
시” 또는 “개선권고”--.

제19조(시정명령 등) ① 지방항공  
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심의결과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  
야 한다.

1.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  
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을 위  
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  
는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지시  
를 발부한다.

2. 공항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전위해요인이 있는 경우에  
는 공항운영자에게 개선권고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명하는 경우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집행이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시정 후 제출한 내용을 검사관등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시정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유지 등) ① 지방항공

를 발부한다.

② ----- 시정지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 -----.

③ ----- 개선권고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  
-----  
-- 이상 -----  
-- 이내의 추진 일정 -----  
-----  
요구하여야 한다.

④ ----- 시정지시----- 시정조치 후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시정조치가 -----  
-----  
-----  
-----  
-----.

제20조(기록유지 등) ① -----

청장은 공항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해 검사와 관련된 자료(제19조에 따른 시정 명령 등을 포함한다.)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6의 시정명령서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생략)

② 공항안전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한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항안전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안전저해요소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7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

-----  
-----  
----- 시정  
지시 -----  
-----  
-----.

② ----- 시정지  
시에 -----  
----- 시정지시서 -----  
-----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현장시정 -----  
-----.

③ -----  
----- 안전위해요인 -----  
-----  
-----.

④ -----  
-- 안전위해요인 -----  
-----  
-----.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제정) ①·② (생략)

제24조(일반사항) ①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공항운영규정을 인가 함으로써, 정부가 공항을 증명하는 공항운영증명 절차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인가된 공항운영규정은 운영증명서의 부속서로서 이행되어 진다.

②·③ (생략)

제25조(공항운영증명 과정) 공항 운영증명과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1. ~ 5. (생략)

제26조(공항운영규정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운영규정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항운영규정의 심사에 앞서 다음 각호의 신청의사 접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신청의사 접수에 대한 검토 후 이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이내

-----.

제23조(규정 제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일반사항) ① -----  
-----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가함으로써-----  
-----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공항운영규정은 공항운영증명  
서(이하 “운영증명서”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공항운영증명 과정) -----  
----- 다음 각 호를 --  
--.

1. ~ 5. (현행과 같음)

제26조(공항운영규정 심사) ① --  
-----  
-----  
-----  
----- 각 호-----  
-----  
-----  
-----  
-----  
----- 7일 이내



대책을 수립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제37조(기록유지 등) ① ~ ③ (생략)

④ 운영증명서가 신규 발급되는 공항의 최초 검사관련 서류(검사결과 보고, 기준미흡시설에 대한 대체운영절차 및 비행안전 확인자료 등)는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BACK-UP)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39조(점검주기) ① 정기점검(Regularly Scheduled Inspection)

1.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에 미

대책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  
-----  
-----  
-----  
-----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기록유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방지하기 위하여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점검주기)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점검(Regularly Scheduled Inspection)은 당해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에 적어도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해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에 적어도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인 감시점검(Continuous Surveillance Inspection)

1.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점검하여야 한다.

③ 주기적인 상태점검(Periodic Condition Inspection)

1. 활동과 시설의 정기적인 상태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할

②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지속적인 감시점검(Continuous Surveillance Inspec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활동과 시설의 주기적인 상태점검(Periodic Condition Inspection)은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매일 실시보다는 낮은 빈도로 실시한다. 점검주기는 항공기 운항 및 시설규모에 따라 주간, 월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수 있지만 매일 실시보다는 낮은 빈도로 실시한다. 점검주기는 항공기 운항 및 시설규모에 따라 주간, 월간 또는 분기별로 실시 할 수 있다.

④ 특별점검(Special Inspection)

1. 활동 및 시설의 특별점검은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불만사항이 접수된 후

(2) 공항이 비정상 상태에 놓인 경우

(3) 중요한 기상 이변, 사고 및 준사고 등과 같은 비정상 사건의 발생

(4) 공사와 관련된 불

④ 특별점검(Special Inspection)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  
다음과 같은 -----  
--.

가. 불만사항이 접수된 경우

나. 공항이 비정상 상태에 놓인 경우

다. 중요한 기상 이변, 사고 및 준사고 등과 같은 비정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지 단차를 줄 수 있다. 단,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서는 포장면 가장자리의 단차는 7.5c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 7. (생략)

제71조(분기별 급유시설 점검) ①  
개요

1. (생략)

2. 항공기 급유에 관한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는 공항 운영규정(ACM)에 수록되어야 하고, 동 규정에 수록된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 5. (생략)

② (생략)

③ 이동급유장비

1. 모든 급유차량은 최소 3개월마다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에 충족하도록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서는 포장면 가장자리(Lip)의 단차는 최대 7.5cm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 ~ 7. (현행과 같음)

제71조(분기별 급유시설 점검) ①  
---

1. (현행과 같음)

2. -----  
-----  
-----  
-----  
----- 점검을 실시하여야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이동급유장비로 사용되는 모든 급유차량은 최소 3개월마다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에 충족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급유차량이 작동상태 및 누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급유차량이 작동상태 및 누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급유차량이 건물로부터 15m, 다른 차량으로부터 3m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다. 가연성을 표시하는 문자 “Flammable”이 차량 양쪽에 표시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문자의 높이는 최소 7.5cm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양쪽에 위험물질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라. 운전석에 “금연” 표시와 흡연도구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재떨이와 라이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마. 차량 양쪽에서 접근 가능한 2개의 소화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충전 및 봉인되어야 하며 점검표가 부착되어 점검일자가 기록되어야 한다. 분말 소화기가 B-C 등

급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ABC 등급으로  
분류된 분말 소화기는 항  
공기를 부식시키고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급유차량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바. 비상차단장치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이 비상차단장치는  
차량 양쪽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전기장치, 스위치, 배선과  
후미등 덮개가 폭발방지구  
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  
고 열, 충돌 또는 충격으로  
인한 발화원으로부터 적절  
히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  
하여야 한다.

아. 사용가능한 접속용 케이  
블(Bonding wire)과 집게  
를 점검하여야 한다.

자. 데드맨 제어장비의 노즐  
을 점검하여야 한다.

차. 차량의 배기장치가 연료

탱크 부분까지 연장되어  
있을 경우 배기가스가 새  
는 곳은 없는지와 적절히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급유차량이 건물로부터 15m,  
다른 차량으로부터 3m 떨어  
져서 주차되어 있는지 점검하  
여야 한다.

3. 가연성을 표시하는 문자 “Fla  
mmable”이 차량 양쪽에 표시  
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문자의 높이는 최소 7.5cm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양쪽  
에 위험물질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운전석에 “금연” 표시와 흡연  
도구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  
다. 재떨이와 라이터가 있어서  
는 아니 된다.

5. 차량 양쪽에서 접근 가능한 2  
개의 소화기 상태를 점검하여  
야 한다. 소화기는 충전 및 봉  
인되어야 하며 점검표가 부착  
되어 점검일자가 기록되어야  
한다. 분말 소화기가 B-C 등

급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ABC 등급으로 분류된 분말 소화기는 항공기를 부식시키고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급유 차량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6. 비상차단장치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이 비상차단장치는 차량 양쪽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신 설>

7. 전기장치, 스위치, 배선과 후미등 덮개가 폭발방지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열, 충돌 또는 충격으로 인한 발화 원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8. 사용가능한 접속용 케이블(Bonding wire)과 집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9. 테드맨 제어장비의 노즐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10. 차량의 배기장치가 연료탱크 부분까지 연장되어 있을



제89조(급유 담당자) ① 인원

1. 공항 내 급유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시스템의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급유담당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1. 위험물 취급업체의 최소 1인 이상의 감독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거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동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독자는 연료에 관한 제반 지식과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경우 배기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와 적절히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9조(급유 담당자) ① 공항 내 급유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시스템의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급유담당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취급업체의 최소 1인 이상의 감독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동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독자는 연료에 관한 제반 지식과 다음 각 호와 같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공항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연료의 주요한 특성을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각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인화성, 색상, 냄새, 촉감 등을 이용)

가. 공항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연료의 주요한 특성을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각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인화성, 색상, 냄새, 촉감 등을 이용)

나. 가솔린을 급유한 왕복 엔진과 터빈 엔진을 구별하고 각각의 주요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각각에 사용되는 연료 및 오일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다. 정기적으로 같은 종류의 연료가 급유되는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물, 미생물의 성장, 계면활성제, 보풀, 녹, 모래, 그 밖의 혼한 고체 입자와 같은 연료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주요 영향을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연료 속에서 위와 같은 오염원이 하나 이상 발견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

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연료 저장시설의 필수 구성요소와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 등의 기본적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장비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연료 저장시설의 필수 구성요소,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화재의 삼각지대를 이해하고 공항에서 더욱 흔하게 발생하는 점화요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연료의 누출 시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

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카. 연료를 저유 탱크, 급유차량 및 항공기에 급유 또는 배출할 때 여과기 및 펌프 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타. 번개 및 비행 중인 항공기의 정전기 발생을 포함하여 대기 중의 방전 현상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파. 대개 연료 저장시설과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 전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는 올바른 소방 기법의 주된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화기 사용법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한다.

하. 연료 배출 절차 및 사전 주의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제공되는 연료의 무결점을 확인하는 품질관리 검

사를 이해하고 시행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적절한 기록 작성을 포함  
하여 품질관리 절차의 성  
공적인 구현 방법을 이해  
하고 설명하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다. 기량유지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라. 개인별 교육훈련 및 보수  
교육훈련 기록을 유지 관  
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가솔린을 급유한 왕복 엔진  
과 터빈 엔진을 구별하고 각  
각의 주요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각각에 사용되는 연료  
및 오일의 종류를 알고 있어  
야 한다.

3. 정기적으로 같은 종류의 연  
료가 급유되는 항공기를 식별  
할 수 있어야 한다.

4. 물, 미생물의 성장, 계면 활성  
제, 보풀, 녹, 모래, 그 밖의 혼  
한 고체 입자와 같은 연료 오  
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신 설>

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주요 영향을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 설>

5. 연료 속에서 위와 같은 오염원이 하나 이상 발견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 설>

6. 연료 저장시설의 필수 구성요소와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 등의 기본적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 설>

7. 장비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 설>

8. 연료 저장시설의 필수 구성요소,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9. 화재의 삼각지대를 이해하고 공항에서 더욱 흔하게 발생하는 점화요인을 식별할 수 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어야 한다.

10. 연료의 누출 시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1. 연료를 저유 탱크, 급유차량 및 항공기에 급유 또는 배출할 때 여과기 및 펌프 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2. 번개 및 비행 중인 항공기의 정전기 발생을 포함하여 대기 중의 방전 현상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3. 대개 연료 저장시설과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는 올바른 소방 기법의 주된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화기 사용법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한다.

14. 연료 배출 절차 및 사전 주의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5. 제공되는 연료의 무결점을 확인하는 품질관리 검사를 이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위험물 취급자의 교육훈련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의 교육훈  
련은 제2항 제1호 가목 내지 하  
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기타

급유 담당자는 안전성냥, 딱성  
냥, 라이터 또는 작동하거나 충  
격을 가하거나 떨어뜨렸을 때  
점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밖의 품목을 소지하지 말아  
야 한다. 특히 모든 탱크, 도크,  
저장구역, 급유차량 및 항공기  
내·외부의 반경 30m이내에서  
는 항상 금지된다.

해하고 시행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6. 적절한 기록 작성을 포함하  
여 품질관리 절차의 성공적인  
구현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하  
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17. 기량유지에 필요한 교육훈  
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8. 개인별 교육훈련 및 보수 교  
육훈련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  
야 한다.

③ 위험물 취급자의 교육훈련은  
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급유 담당자는 안전성냥, 딱  
성냥, 라이터 또는 작동하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떨어뜨렸을 때  
점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밖의 품목을 소지하지 말아  
야 한다. 특히 모든 탱크, 도크,  
저장구역, 급유차량 및 항공기  
내·외부의 반경 30m이내에서  
는 항상 금지된다.



⑥ 위험물 감독

급유 담당자를 적절히 감독하고 교육훈련 및 지식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장비 및 필수 구성요소가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인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수 정기점검은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며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의 “규정에 적합한” 연료가 올바른 등급과 분량으로 항공기에 정기적으로 급유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⑦ 연료 저장시설,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의 작동

1. 급유 담당자는 연료 저장시설,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의 작동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자격 있는 직원만이 연료 저장시설이나 장비를 가동하고 항공기에 급유를 실시한다.

⑥ 급유 담당자를 적절히 감독하고 교육훈련 및 지식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장비 및 필수 구성요소가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인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수 정기점검은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며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의 “규정에 적합한” 연료가 올바른 등급과 분량으로 항공기에 정기적으로 급유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⑦ 급유 담당자는 연료 -----  
----- 작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격 있는 직원만이 연료 저장시설이나 장비를 가동하고 항공기에 급유를 실시한다.

나. 연료 하역 및 급유차량의 적재 작업은 자격 있는 직원이 참석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다. 저유 탱크에 연료를 반입하기 전에 규정에 적합한 연료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원이 들어있지 않고 색상, 냄새 및 촉감이 정상적이며 “밝고 깨끗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라. 연료가 반입되는 시점부터 특정 항공기에 급유 될 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적당한 기록체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마. 급유는 반드시 실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한다.

바. 항공기 급유차량은 다른 급유차량과 3m 이상, 건물에서 15m 이상, 급유 및 배출 중이 아닌 항공기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사. 모든 하역, 적재, 급유 및

연료 배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필요하지 않은 모터, 엔진, 무선 장비, 그 밖의 전기 및 기계 장비(보조 동력 장치만을 제외)의 전원을 전부 차단하고 그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아. 연료를 취급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에는 모든 시스템 및 급유 차량을 접지하여야 한다.

자. 항공기 및 급유차량의 연료탱크를 열기 전 또는 급유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급유차량을 적재 도크의 지면에 적어도 하나의 결속 와이어로 연결하여야 한다.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과 급유중인 항공기 사이를 본딩(Bonding)한다.

차.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모든 연료 저장시설, 급유차량, 하이드

란트 급유전의 작동 상태  
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또  
한 항공기에 적재 또는 급  
유할 연료에 오염물질이  
없고 색상, 냄새, 촉감 및  
등급이 정상적이며 “밝고  
깨끗한” 상태인지를 확인  
한다.

카.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  
기 전에 지난 7일 동안 다  
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  
인한다.

(1) 연료 저장시설, 하  
이드란트 급유전 및  
급유차량에 장착된  
모든 여과기의 차등  
압력 점검

(2) 모든 노즐 및 호스  
연결장치의 거름망  
육안점검

타.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  
기 전에 지난 30일 동안 다  
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  
인한다.

(1) 모든 유입 통의 여  
과기 육안점검

(2) 모든 여과기 하단  
부분에서의 수분탐  
지 점검

(3) 제트 연료시스템인  
경우 마지막 여과기  
의 하단부분에 대하  
여 최소한 육안에  
의한 색상점검

(4) 눈에 띄는 점화 원  
인을 찾기 위한 야  
간 불꽃 검사를 포  
함하여 모든 급유차  
량의 상태에 관한  
세밀한 육안점검

(5) 내부 연소 엔진의  
배기 시스템에 관한  
손상 또는 누출 여  
부

(6) 급유차량 전체의  
기계적 상태

과.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  
기 전에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1) 전체 연료 시스템  
에 들어있는 각각의  
여과기를 교체하였  
거나 또는 요소별  
점검을 통하여 추후  
12개월간 계속 사용  
할 수 있는지의 여  
부

(2) 모든 급유호스의  
절단 부위, 노출된  
전선, 변색, 물러진  
부분, 물집, 연결장  
치 끝부분의 편차  
또는 고장 가능성  
확인

(3) 모든 결속 및 접지  
장치 또는 연결부에  
전기가 통하는지 점  
검

(4) 접근 가능한 모든  
저유 탱크를 열고  
침전물 또는 기타  
오염물의 축적여부  
에 관한 육안점검

하. 급유차량의 적재 및 항공

기 급유 작업은 무인 통제  
장치가 작동 가능하고 연  
료의 흐름을 이 장치로 통  
제하는 경우에만 실시한  
다.

거. 연료 저장시설과 모든 장  
비는 연료를 오염시키거나  
화재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쓰레기 또는 파편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 되었는지 확인한다.

너. 모든 소화기의 충전량과  
작동상태를 최소 연 2회씩  
점검한다.

더. 공항 부근에서 번개가 칠  
때에는 연료 관련 작업을  
잠시 중단한다.

<신 설>

<신 설>

2. 연료 하역 및 급유차량의 적  
재 작업은 자격 있는 직원이  
참석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3. 저유 탱크에 연료를 반입하  
기 전에 규정에 적합한 연료  
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원이 들어있지  
않고 색상, 냄새 및 촉감이 정  
상적이며 “밝고 깨끗한” 상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인지를 확인한다.

4. 연료가 반입되는 시점부터 특정 항공기에 급유 될 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적당한 기록체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5. 급유는 반드시 실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한다.

6. 항공기 급유차량은 다른 급유차량과 3m 이상, 건물에서 15m이상, 급유 및 배출 중이 아닌 항공기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7. 모든 하역, 적재, 급유 및 연료 배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필요하지 않은 모터, 엔진, 무선 장비, 그 밖의 전기 및 기계 장비(보조 동력장치만을 제외)의 전원을 전부 차단하고 그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8. 연료를 취급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에는 모든 시스템 및 급유차량을 접지하여야 한다.

9. 항공기 및 급유차량의 연료



<신 설>

<신 설>

탱크를 열기 전 또는 급유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급유차량을 적재 도크의 지면에 적어도 하나의 결속 와이어로 연결하여야 한다.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과 급유중인 항공기 사이를 본딩(Bonding)한다.

10.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모든 연료 저장시설,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또한 항공기에 적재 또는 급유할 연료에 오염물질이 없고 색상, 냄새, 촉감 및 등급이 정상적이며 “밝고 깨끗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11.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에 지난 7일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연료 저장시설, 하이드란트 급유전 및 급유차량에 장착된 모든 여과기의 차등압력 점검

<신 설>

<신 설>

나. 모든 노즐 및 호스 연결장  
치의 기름망 육안점검

12.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  
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  
에 지난 30일 동안 다음사항  
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모든 유입 통의 여과기 육  
안점검

나. 모든 여과기 하단부분에  
서의 수분탐지 점검

다. 제트 연료시스템인 경우  
마지막 여과기의 하단부분  
에 대하여 최소한 육안에  
의한 색상점검

라. 눈에 띄는 점화 원인을 찾  
기 위한 야간 불꽃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급유차량의  
상태에 관한 세밀한 육안  
점검

마. 내부 연소 엔진의 배기 시  
스템에 관한 손상 또는 누  
출 여부

바. 급유차량 전체의 기계적  
상태

13.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  
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

에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가. 전체 연료 시스템에 들어 있는 각각의 여과기를 교체하였거나 또는 요소별 점검을 통하여 추후 12개월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모든 급유호스의 절단 부위, 노출된 전선, 변색, 물러진 부분, 물집, 연결장치 끝부분의 편차 또는 고장가능성 확인

다. 모든 결속 및 접지장치 또는 연결부에 전기가 통하는지 점검

라. 접근 가능한 모든 저유 탱크를 열고 침전물 또는 기타 오염물의 축적여부에 관한 육안점검

14. 급유차량의 적재 및 항공기 급유 작업은 무인 통제장치가 작동 가능하고 연료의 흐름을 이 장치로 통제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15. 연료 저장시설과 모든 장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는 연료를 오염시키거나 화재  
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쓰레기  
또는 파편 없이 깨끗한 상태  
로 유지 되었는지 확인한다.

16. 모든 소화기의 충전량과 작  
동상태를 최소 연 2회씩 점검  
한다.

17. 공항 부근에서 번개가 칠 때  
에는 연료 관련 작업을 잠시  
중단한다.